

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업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업공학에 관한 학술과 기술을 발전, 보급, 응용하여 우리나라 산업기술진흥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산업공학회”라 부른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술발표회, 토론회 및 강습회의 개최
2.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행 및 배부
3. 산업합리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학협동
4. 연구의 장려 및 연구업적의 심의, 표창 및 포상
5. 국내외 타 기관과의 정보 교환

② 제 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무실 임대

③ 제 2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분류 및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명예회원, 정회원, 준회원, 대학생회원, 온라인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분류하며 각 회원의 자격 및 입회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이 법인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의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대된 자.

2. 정회원

정회원은 산업공학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또는 산업공학 관련분야의 연구 및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자.

3. 준회원

준회원은 대학원에서 산업공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석사,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

4. 대학생회원

대학생회원은 대학에서 산업공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자.

5. 특별회원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6. 단체회원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연구소, 도서관, 기술정보 및 자료 보급기관, 산업체 및 공공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모든 회원은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회비 체납자(회계연도 마감일 기준)는 체납분 납부 완료 시까지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제명) 회원이 이 정관규정을 위반하여 이 법인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평의원회의 심의, 의결로써 제명 처분한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36 인 이내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상 포함),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과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회장 및 부회장 제외)는 회장의 제청으로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제12조(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요청에 따라 학술, 행정, 사업 등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회장의 유고 시에는 학술담당부회장이 회장을 대리한다.

③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을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주요업무를 심의, 의결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14조(기타 기구) 이 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학술분과위원회, 지회, 편집위원회, 간사를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총회

제1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과 사업계획서의 승인.
3.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인준과 평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이 정관에서 정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제16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개최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정확한 날짜는 개최 15일 전에 공고한다.

②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회가 회의 소집을 의결하였을 때.
2. 평의원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었을 때.
3. 정회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었을 때.

제17조(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의결은 참여 정회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5장 평의원회

제18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대한 사항.
2.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의 승인.
4. 학회상 시상 및 명예회원의 추대에 관한 사항.
5.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회장이 제의한 주요 안건.
6. 이 정관에서 정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19조(평의원회의 구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 중에서 70인 이내의 평의원을 총회에서 선출하여 평의원회를 구성한다.

1. 각 지회에서 추천하는 정회원, 다만 후보자 수는 해당 지회의 재적 정회원 수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

제20조(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1조(평의원회의 소집)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회장이 회의 7일 이전까지 그 목적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1.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2. 평의원 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제22조(의결 정족수) ①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평의원 수의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6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소집과 총회에 제출할 의안.
2. 사업계획, 운영과 예산편성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입회에 관한 사항.
4. 평의원 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
5. 제규정의 제정, 개편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이 정관에서 정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 의결사항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 이사는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이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7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 의결사항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정)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구성한다.

1. 입회비 및 회비.
2. 기부금 및 보조금.
3. 기존 재산의 증가분
4. 기타 수입.

제29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예산)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예산안을 작성하고 동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마감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연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심의를 거쳐 다음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권의 채무 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해산법의 재산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또는 공익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5조(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령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제38조(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임기	주소
회장	정낙은	2	서울 성북구 정능동 266-3
부회장	배도선	2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산 4-51
부회장	김만식	2	서울 성동구 중곡동 66-2
감사	주학중	2	서울 관악구 동작동 반포아파트 67동 503호
감사	유성재	2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39-1
이사	김수곤	2	서울 관악구 동작동 반포아파트 79동 502동
이사	김영휘	2	서울 관악구 동작동 반포아파트 104동 103호
이사	박경수	2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산 4-51
이사	서봉철	2	서울 용산구 용산동 2가 1-166
이사	신현표	2	서울 마포구 창전동 436-5
이사	이상용	2	서울 성동구 구의동 254-83
이사	이순요	2	서울 성동구 응봉동 193-10
이사	전병완	2	서울 관악구 동작동 삼호아파트 13동 201호
이사	황의철	2	서울 동대문구 이문 2동 343-4
이사	황학	2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산 4-51

부 칙

1. 이 정관은 1976.12.18.부터 시행한다. 단, 법인에 간한 조항 및 문구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1977. 7.)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경과조치로서 본 정관에 의한 초대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경고조치로서 본 정관에 의한 초대 평의원은 제20조 및 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